

- 6) 보직 장학관·보직 교육연구관, 초빙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
- 7) 교장·원장 임용 적격자 선정을 위한 교장·원장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8)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
- 9) 그 밖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

#### 바. 운용세칙(동규정 제33조)

- 1)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.

#### 사.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(「교육공무원법」 제59조,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8조)

##### 1) 위원회의 구성

- (가)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9조제2항 후단(부교육감이 2명인 시·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다.)에 따라 부교육감이 2명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1부 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.
- (나)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9조제1항(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감 소속으로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를 둔다)에 따른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(이하 “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”라 한다)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(다)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,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##### 2) 위원회의 운영

- (가)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동규정 제2조제3항 및 제3조부터 제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교육부”는 “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”으로, “교육부장관”은 “교육감”으로 본다.
- (나)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